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30일

홍은제2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84-02-08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	거주불명등록이전 2023-01-30